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·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2조의2 제1항)
-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,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3조제1항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,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,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
II. 검토 의견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의 중복성 문제, 재해지원 원칙(응급복구 등) 위배, 타 분야 형평성 논란, 제도 간 상충(재해지원과 재해보험) 및 재원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임.

구체적으로는,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범 정부 차원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¹⁾을 수립하고 있어 중복 소 지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, ② 국가가 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²⁾상 재 해지원 원칙에 위배되어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 고, ③ 재해지원에서 생산비를 보상할 경우, 재해보험³⁾과의 상충 으로 보험 활성화를 저해하고 막대한 재정 수반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수용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음.

-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농업재해보험과의 지원범위·역할 중복, 지 원내용의 불명확성에 따른 과도한 지원 소요 증가 우려 등으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,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)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
3) 재해보험 가입률: ('01) 17.5% → ('16) 27.5 → ('19) 38.9 → ('23) 52.0 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)

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지원은 보상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인데, 개정안과 같이 생산비에 대한 피해 보상 개념의 지원을 할 경우 보험가입 유인을 저해시켜 정책 보험 정착 및 활성화를 저해하고, 피해 규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기준이 달라져 자연재난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